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제89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을 사임하고 무임이 되었을 때, 총회 생활보장제한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본 지원금의 관리는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가 관리한다.

제3조(지급조건)

1.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교역자가 교회를 사임하고 무임으로 있을 때.
2. 기관목사로 시무하는 교역자가 기관을 사임하고 무임으로 있을 때.

제4조(지급방법)

1. 제3조에 의해 무임이 된 교역자가 총회에서 시행하는 생활보장제한금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2.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에서 심사규정에 의하여 심사하여 생활보장제 지급원칙에 의해 지급한다.
3. 무임교역자로 생활보장제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임 후 1년 안에 수급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기간)

무임이 된 교역자는 제6조에 의해 지급하되, 무임기간 동안 다른 기관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교역자에 한해서 6개월까지 지급한다. 단, 무임교역자생보지급 후 12개월 안에 2번 이상 무임이 된 교역자의 경우에는 무임교역자 생보 지급을 총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6조(지급운영)

1.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지급 대상자는 노회 생활보장제위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노회 생활보장제위원장은 이를 매월 집계하여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에 추천하며,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에서는 제4조(지급방법)에 의해 지급한다.

3. 무임교역자 확인은 노회 생활보장제위원장이 노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매월 집계표에 첨부하여 보고한다.

제7조(시행 및 개정)

1. 본 시행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05년 6월 제89회 총회 실행위원회 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